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정보화가 발달하여 생활이 편리해졌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포털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메신저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다. 그러나 편리해진 만큼 나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 쇼핑하기 위해 입력한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가 인터넷을 떠돌고, 포털사이트가 내 검색 기록과 내 관심사를 분석한다. 이메일과 메신저로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는 회사에 저장되었다가 추적당한다.

은행, 지하철, 편의점, 병원, 주차장, 버스 등 우리 주변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CCTV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행정기관은 수시로 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학교나 회사는 지문인식기와 카드인식기로 나의 출입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나 위치도 언제든지 파악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개인의 모든 일상생활이 낱낱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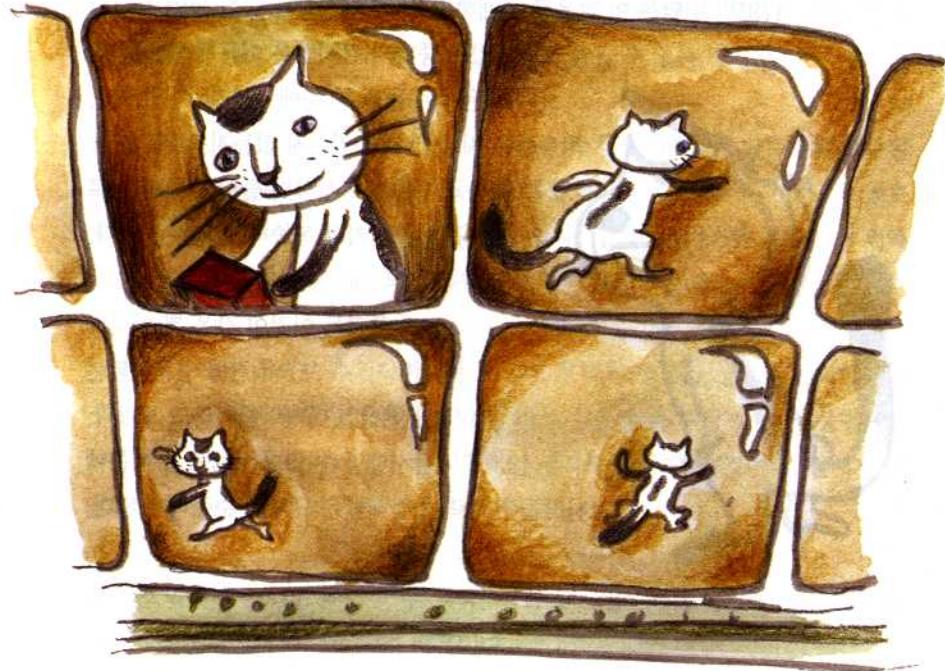


감시 사회의 등장

정보화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손쉬워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할 수 있다.

예전에 정부와 기업은 모든 정보를 종이에 기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정보는 종이 파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여러 정보를 모아 한눈에 관리할 수도 있다. 나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결정은, 실제의 내가 아니라 이 기록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전보다 방대해진 개인정보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개인정보가 감쪽같이 복사되고 대규모로 유출되는 일이 많아졌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만이 아니다.



감시란,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즉, 누가 규율을 잘 준수하고 누가 안 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제제를 가하는 것이 감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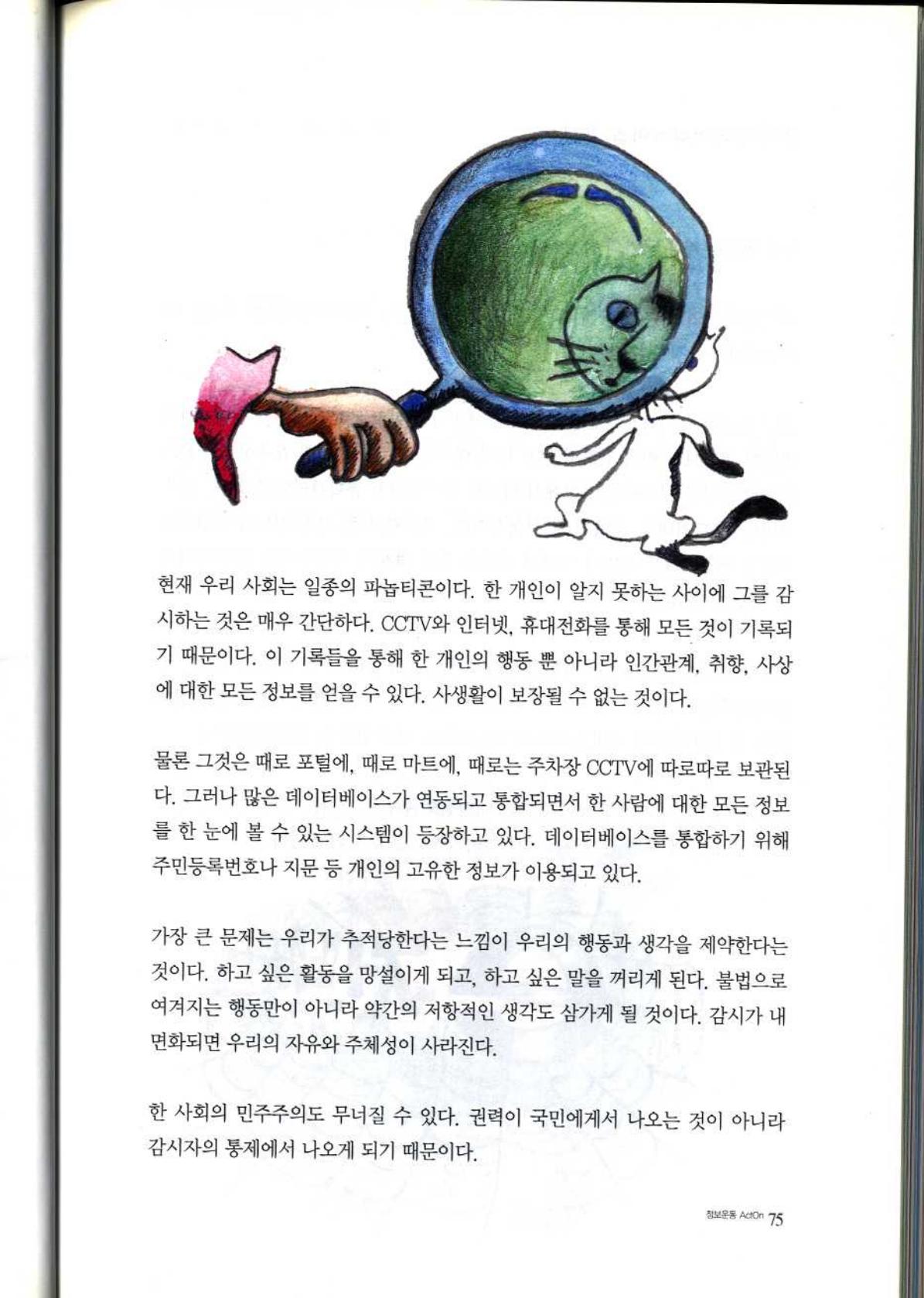
감시 사회의 모습은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잘 보여주고 있다.
독재자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전국민을 감시한다.

이 소설에서 국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감시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은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원형감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791년 벤담은 이 감옥을 설계하면서, 감방은 환하게 한 눈에 보이고
간수들이 있는 중앙의 감시탑은 어둡게 만들었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한 눈에 감시할 수 있지만,
죄수들은 지금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죄수들은 항상 간수들이 원하는 대로
규율을 지키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푸코는 이것이 감옥 뿐 아니라

근대 권력이 유지되는
일반적인 매커니즘이라고 보았다.
감시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이 정해놓은 규칙에 순종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종의 파놉티콘이다. 한 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CCTV와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모든 것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을 통해 한 개인의 행동 뿐 아니라 인간관계, 취향, 사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때로 포털에, 때로 마트에, 때로는 주차장 CCTV에 따로따로 보관된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고 통합되면서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추적당한다는 느낌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활동을 망설이게 되고, 하고 싶은 말을 꺼리게 된다. 불법으로 여겨지는 행동만이 아니라 약간의 저항적인 생각도 삼가게 될 것이다. 감시가 내면화되면 우리의 자유와 주체성이 사라진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도 무너질 수 있다.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의 통제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감시

가장 위험한 것은 국가의 감시이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다.

최근 정보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역량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특히 대다수 국가가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개인정보가 통합관리되고 있다. 호적, 주민등록, 토지대장,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세무자료 등 각종 정보가 전산처리되면서 행정기관은 국민의 개인적 신상은 물론 경제적 사정까지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신분등록제도가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근대 이후의 국가는 국민의 범위를 특정하고 국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감시 활동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활동이 단순한 개인정보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감시

특히 수사기관의 감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려는 정부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점점 더 많이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화로 통신 내용을 저장하고 감청하는 것이 손쉬워지면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인터넷의 저장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손쉬운 감시와 추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통신의 비밀은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수사기관의 통신에 대한 감시와 추적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감시받아야 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감시

기업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정보를 계속 관리하고, 웹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새로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기업은 시장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고, 고객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광고를 개발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고객의 통신수단으로 계속 광고를 내보내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 한 기업이 수집한 고객정보는 다른 기업에게 돈을 받고 팔리거나 기업간의 제휴, 인수, 합병 등으로 공유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고객의 생각’ 까지도 읽는다는 말이 있다.

고객이 크리스마스 전구를 사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면 고객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취향, 재정상태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조절해 왔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특정 상품을 제공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이 상품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물론 이런 과정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한다. 이른바 고객 성향에 맞춘 ‘맞춤서비스’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소비자는 철저하게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어떤 회사는 흑인이나 남미계, 그리고 기타 외국 출신을 ‘소수집단’으로 분류하고 마케팅 대상에서 노골적으로 제외하였다. 이런 분류는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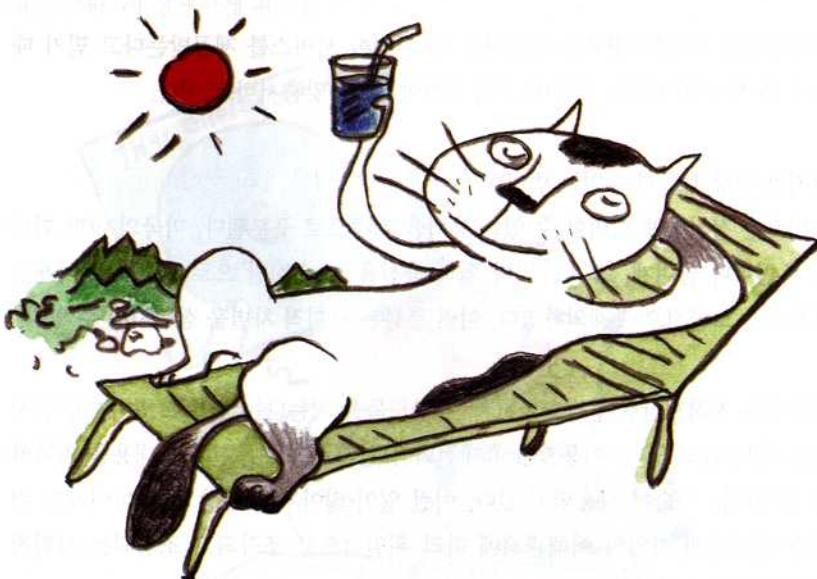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정보도둑을 막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감시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통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통제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일상 생활의 여가와 취미가 철저하게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작되고 조정되는 사회적 감시가 확산될 것이다.

혼자 있을 권리

감시 사회에 맞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을 권리’ 혹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즉 나의 사생활과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다.

이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몸이나 집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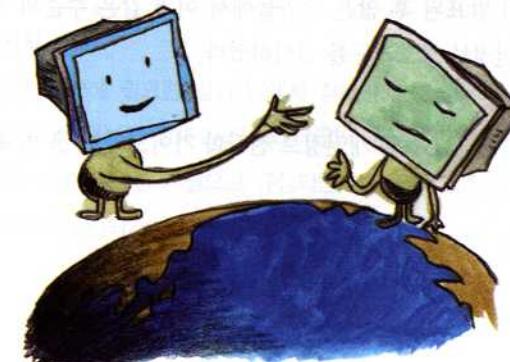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체로 대면접촉에 의존하던 전근대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비대면접촉이 늘어나면서 기록이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을 기록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나 자신의 실체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록한 서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이용해야 한다.

또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면서, 상업적인 광고 우편물이 쏟아지고 가택 방문 영업이 늘어났다. 개인정보로 사생활이 침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보호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과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목소리, 얼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1980년에 발표된

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은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즉 OECD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주체, 즉 시민과 노동자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OECD의 원칙이 발표된 후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립하였다.

UN에서도 1990년에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원칙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수집 제한의 원칙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 단체/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인종·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생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면 안된다.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토대로 정부와 기업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한 개인이 엉뚱한 사람으로 규정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범죄자로 오인되거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거나)

*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후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도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 목적이 변하는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따르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에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책은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비밀리에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된다면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개인은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손쉽게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8. 책임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가가 위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아직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없다.

역감시권

그러나 최근 온 사회에서 급증한 감시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만 맞서 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기업들이 실제로 내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누가 언제 어떻게 CCTV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기 어렵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다.

현대의 감시는 굳이 고지나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나 CCTV는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으며 개인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때 고지를 했더라도 감시 기술이 애초 밝힌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 일도 많다. 예를 들어 교통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가 집회시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하거나 고지한다면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개인이 개인정보 수집자와 대등한 위치가 아닐 경우 무용지물이다. 시민과 노동자가 정부나 기업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있어도 개인이 실제로 자기 정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보다 적극적인 '역감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역감시는 정부와 기업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을 주로 걱정해 왔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권력을 역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데이빗 라이언 <전자감시사회>

역감시권은, 감시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 시민과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역감시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통과 흐름'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때 개입하고자 한다. 애초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았으면 유출되지도 감시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최근 CCTV 반대,
생체(전자)신분증 반대와
같은 역감시 운동은,
특히 정부가 개인정보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려는 데 저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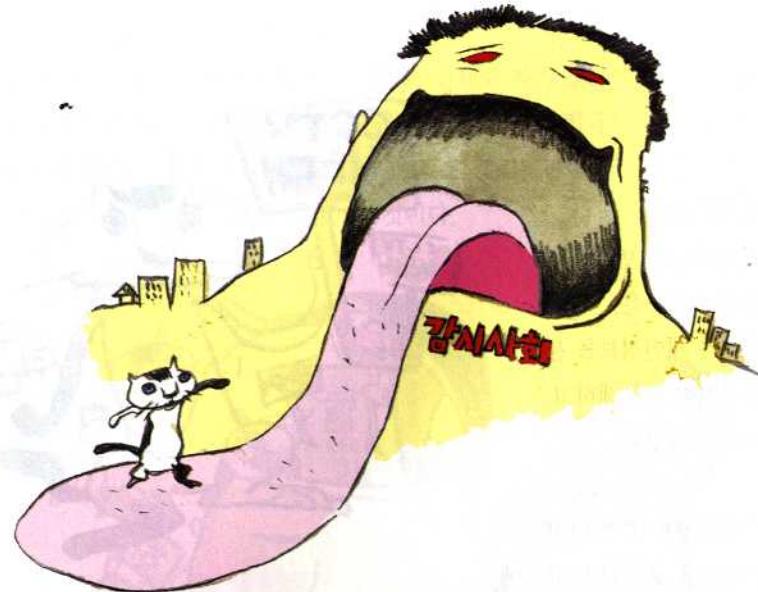


감시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생각과 활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역감시 운동은 개인과 집단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감시를
문제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은 정부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도 감시 기술을 도입할 때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역감시권은 일부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로 도입되어 있다.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정부와 기업의 감시 기술에 대하여 공공적으로 평가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 곳곳에 감시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완전 감시 사회’로 순순히 걸어 들어갈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거나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지문으로 출입하거나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과거보다 편리해진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가 제공하는 생활의 편리함에 만족하기만 할 것인가?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러 방법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생활은 점점 더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통제력과 결정권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빠르고 편리하고 값싸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빠르고 편리하고 값싸게 당신에 대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는 추적당하고 있거나 추적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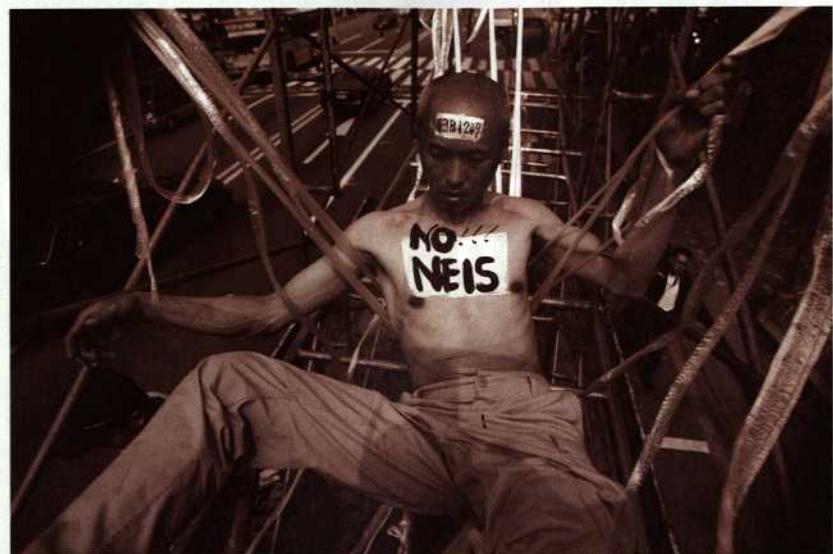
그리고 무분별한 감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치적 권리

90 세계인권선언 제21조

91 소라의 권리찾기

101 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러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라의

권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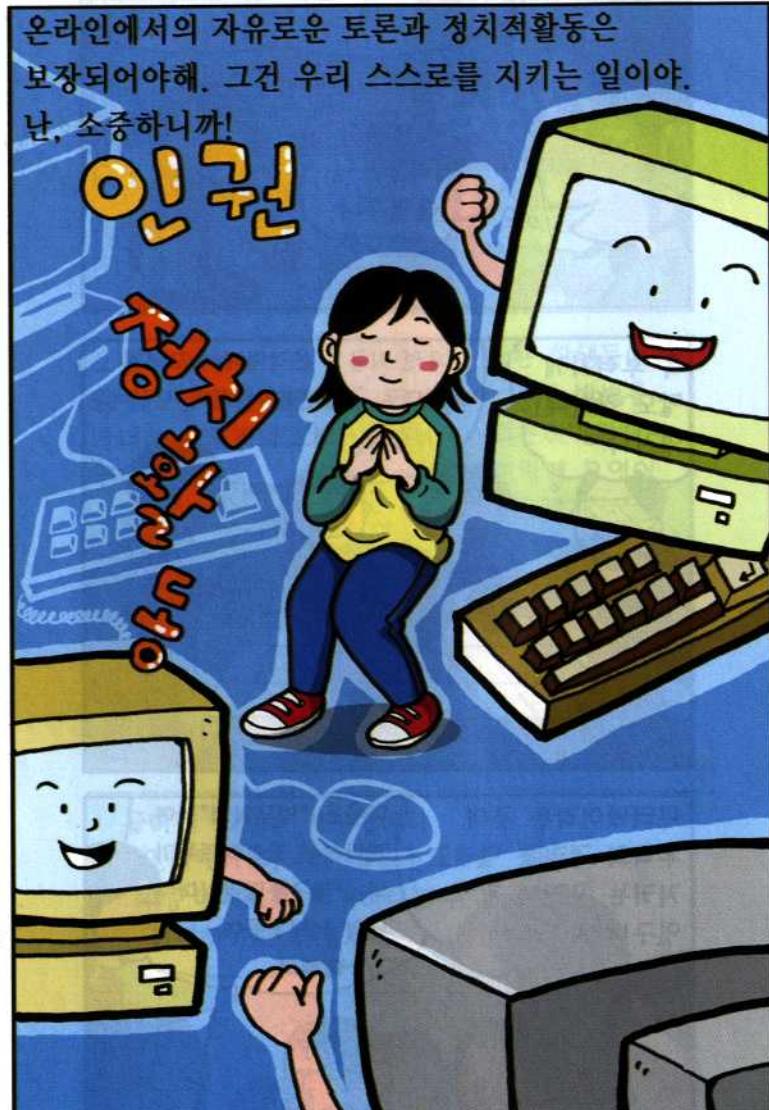












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정치란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는 정치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정치적 권리의 의미

좁은 의미의 정치적 권리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즉,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를 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권리는 단순한 투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넓은 의미의 정치적 권리는 참정권 외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나 정당을 결성하고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모든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및 사회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있어야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권리와 여러 다른 인권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적 권리의 역사

정치적 권리가 등장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다.

봉건적인 신분제도 하에서 국왕과 소수 귀족 및 성직자에 의해 차별받고 억압받던 시민 노동자 민중 계층이 봉기하여 유럽 곳곳에서 근대시민혁명이 발생하였다. 이때 부르주아 상공시민 계급은 신분제에 얹매이지 않는 사유재산의 보장과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의회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권리장전(1688)이나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문(1789)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제 정치가 등장하였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매우 중요해진다.



대의제 정치의 한계

시민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 계급은 신분이나 재산, 성별에 따라 참정권에 제한을 두었다. 즉, 노동자, 여성은 물론 식민지 대중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물론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권리도 없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이들의 경제적 권리나 다른 인권도 크게 제약당했다.

이에 따라 재산·신분·성별·교육 정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평등한 선거권, 즉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투쟁이 계속되었다. 산업혁명기였던 1830년대에서 1840년대 영국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요구하는 차티스트운동을 벌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여성들도 꾸준히 선거권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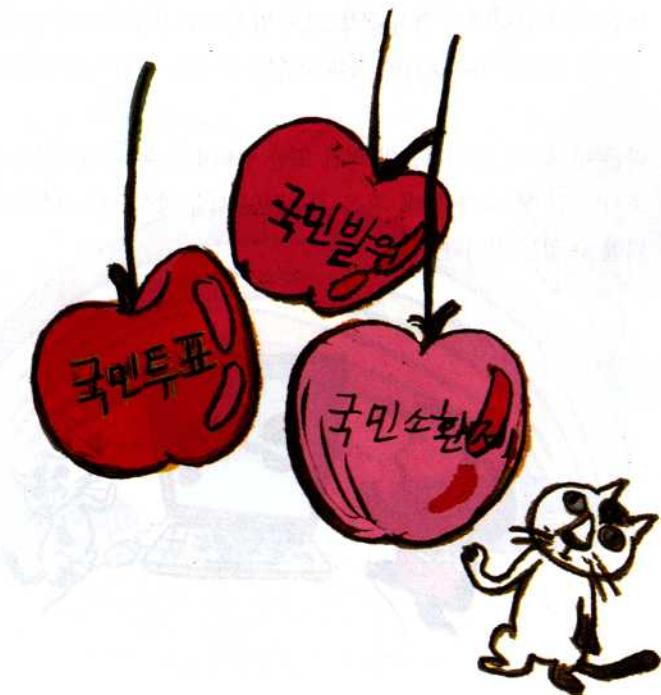
그러나 선거를 통한 대의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그 대표자가 국가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정치 참여가 제한되면서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이 나타났다.

원격 민주주의

과거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 직접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였다. 이때 시민은 성인 남성만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당시의 직접 민주 정치는 현대 정치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적 요소는 국민발의,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를 꼽을 수 있다.

국민발의는 의회에 속하지 않은 국민도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민투표는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국민소환은 국민이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대의제 정치의 기술적 보완

대의제 정치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비판 속에 등장한 정보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원격 민주주의론(텔레데모크라시)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화가 대의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직접 민주 정치가 기술적으로 실현 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정치적 정보와 의견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다면 대의제 정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 을 전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정치인들은 과거보다 손쉬우면서도 폭넓게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등 과거보다 늘어난 매체 환경에서 정치 정보 역시 양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하게 생산되어 유권자들이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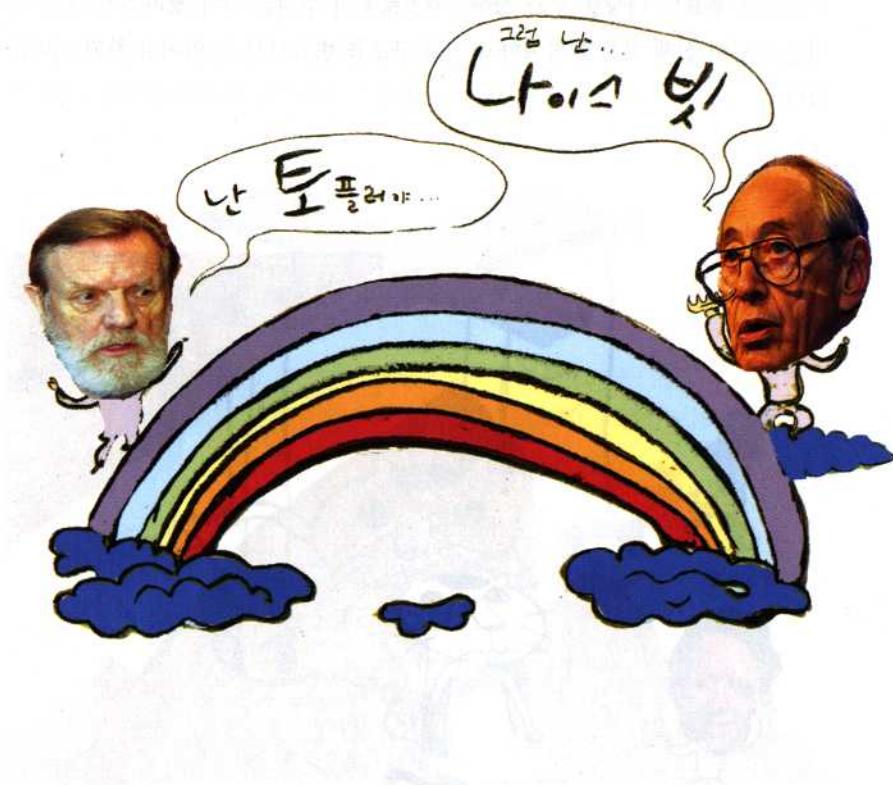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들의 의견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정치인에게 전달된다. 여론 조사나 전자투표를 통해, 혹은 직접적인 서술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 민주 정치의 기술적 실현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보화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여론조사나 투표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플러, 네이스빗 등 미래학자들은 낙관적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가정에서 전자적으로 공동체 정책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국민발의와 국민 투표를 치룰 수 있다. 의사결정권을 국회와 같은 대의 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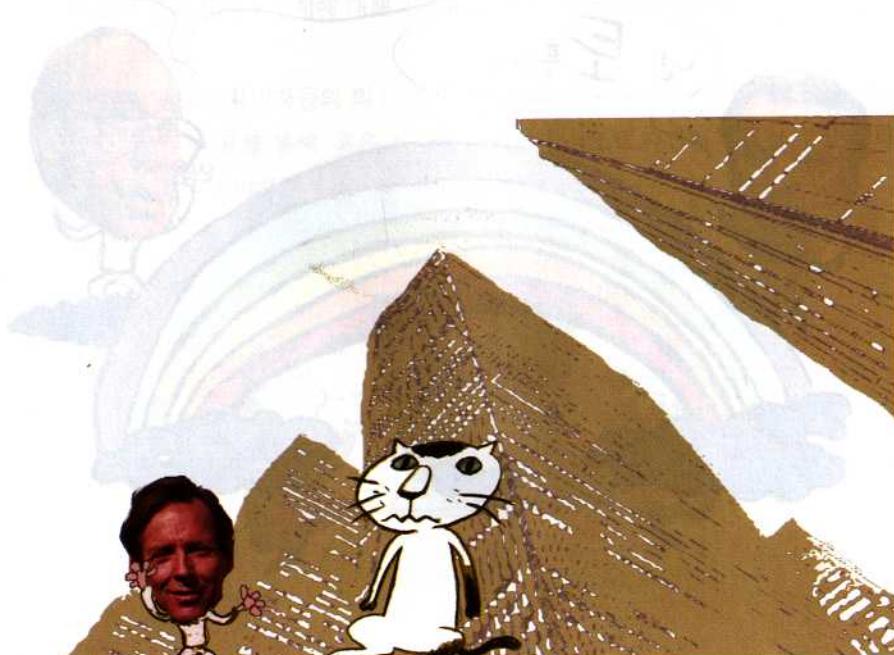


원격민주주의론 비판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정보화의 기술적 측면이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기술결정론적이라는 것이다. 정보화가 정치인과 유권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증가시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권력이 자동적으로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 의회 같은 원격민주주의의 성패는 사용된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참여관에 따라 좌우되었다. 즉 기술이 정치적 변화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조직상의 선택이 정보화의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한다.

무엇보다 투표의 대상을 누가 정하는가? 토론의 주제는 누가 정하는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실제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참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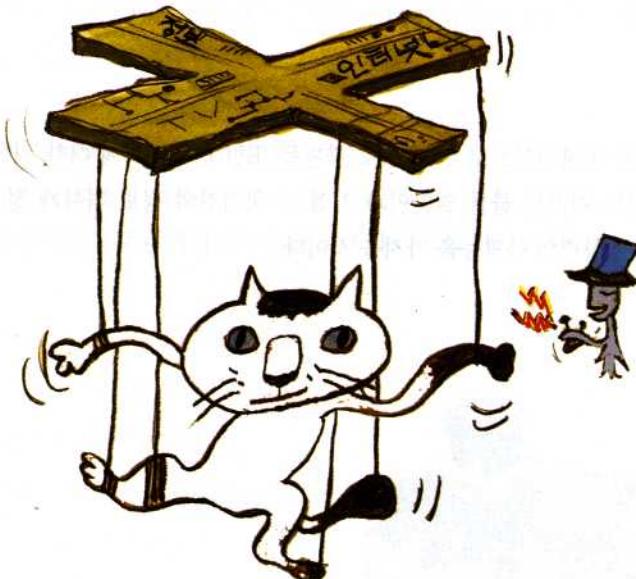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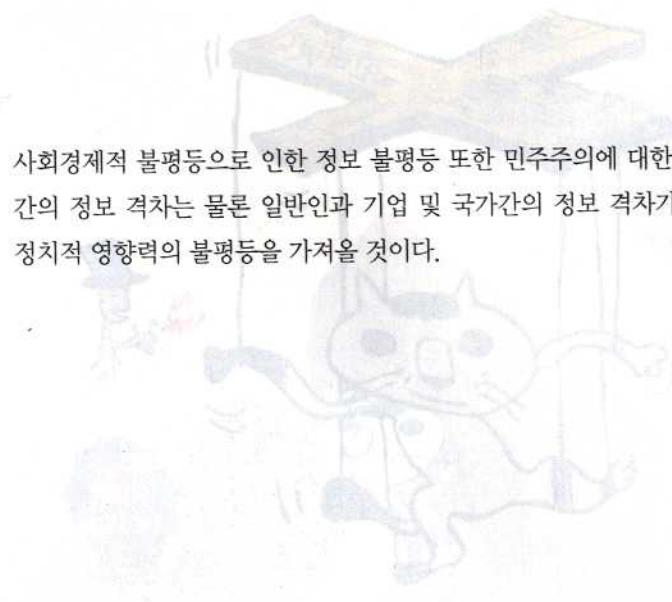
정보화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아테네와 같은 직접 민주 정치에서는 면대면으로 직접 접촉하여 토론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자적으로, 즉 비대면으로 참가하면, 이면에 있는 정치 관료들이 권력을 쥐고 정보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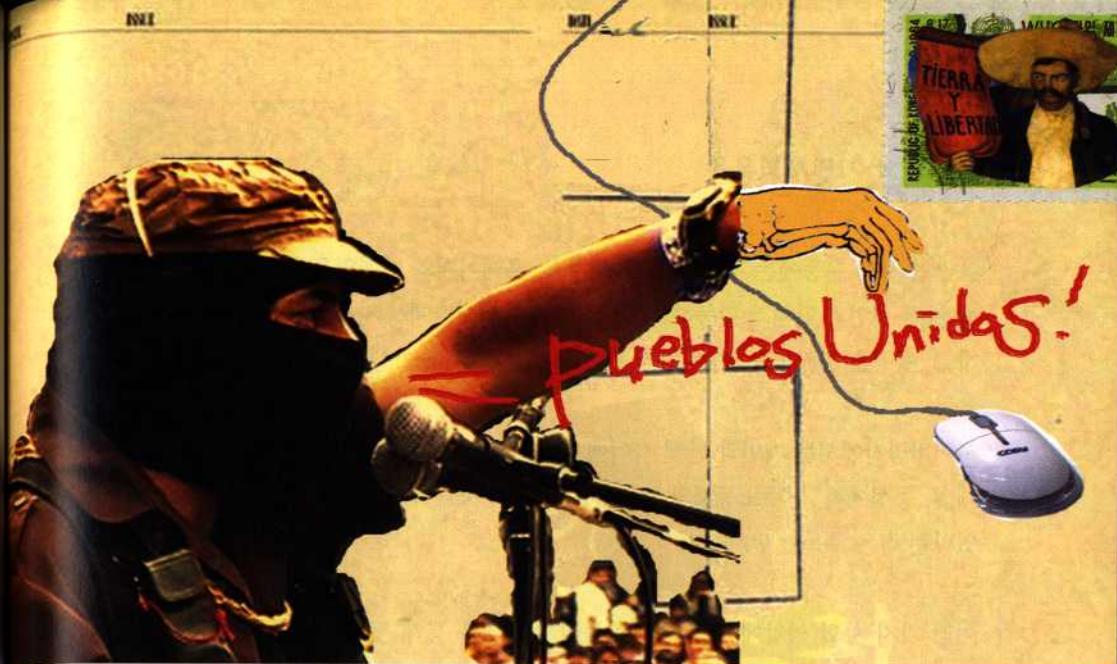
진지한 정책 논쟁 보다 정치가의 외양이 과장되게 부각될 수도 있다. TV와 같은 매체가 정치 과정에 등장한 이래로 정치 정보가 대중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락적으로 구성되고 정치인은 연예인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과정에서 사람들의 개인정보, 의견이나 성향이 수집되면서 그에 따른 전제 정치가 등장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정부나 정치 관료에 의한 감시와 차별이 교묘하게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정보 불평등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개인 간의 정보 격차는 물론 일반인과 기업 및 국가간의 정보 격차가 정치의 장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은 일반 국민이 직접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며 활동해 온 멕시코 농민 계열라 <사빠띠스따 민족 해방군>을 보라.

멕시코의 치아파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세계로 퍼뜨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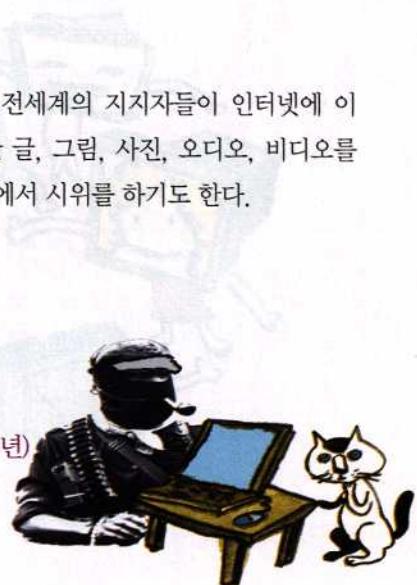
사빠띠스따가 인터넷으로 성명을 발표하면, 전세계의 지지자들이 인터넷에 이 성명을 퍼뜨리고, 성명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글, 그림, 사진, 오디오, 비디오를 제작하고, 자발적으로 각국 멕시코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한다.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정치력은,

비트에서 비트로 연결되는 조용한

힘의 축적에 의해 세워졌다.”

– 사빠띠스따 부사령관 마르코스(1996년)



정보화와 시민사회운동

온라인 사회 운동에는 사무실이 필요 없고,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하고, 회원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사이버 실천을 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개인과 단체 사이에 다양한 연대가 이루어진다. 특히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러 가지 사회 억압에 시달리는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찾아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공간에서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술은 그 가능성을 제공한다.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이다.



노동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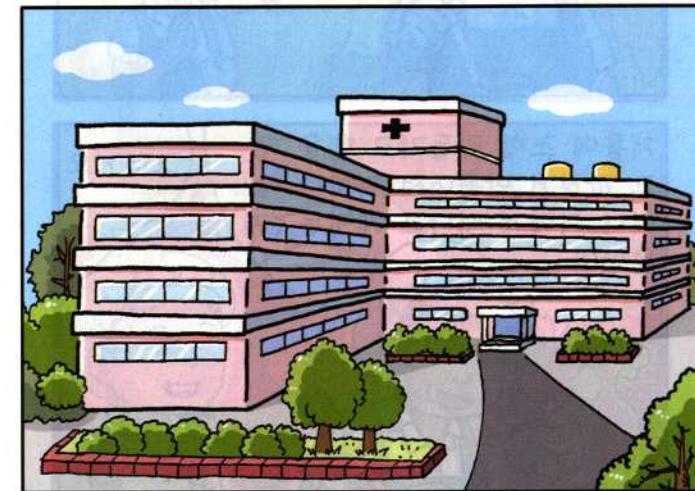
- 114 세계인권선언 제23조
- 115 다 보여요 미션씨~
- 123 노동권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 제 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보여요
미션씨~











신성한 노동? 그런 게 아직도 있나?

노동권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딘가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노동권은 현대 인권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권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 속에서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노동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권은 무엇인가? 기업이 주도하는 정보화는 노동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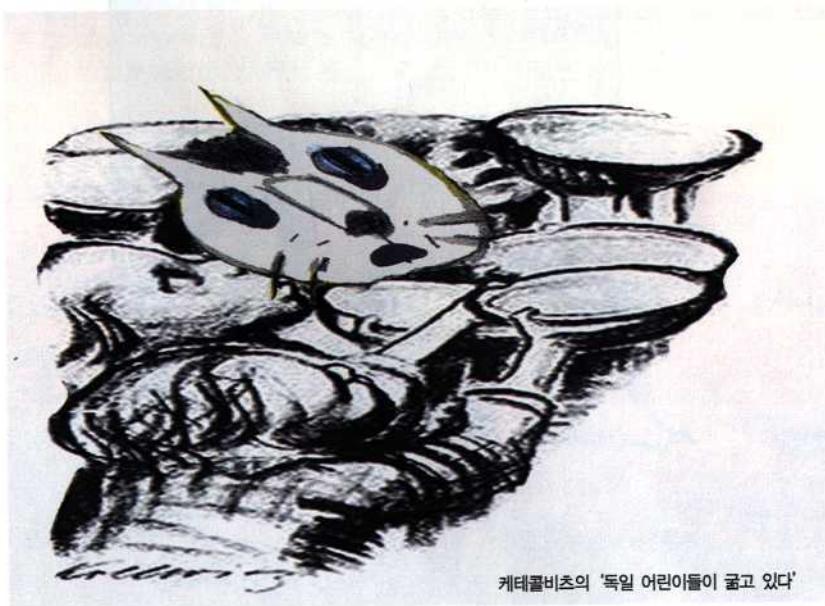
밀레의 '이삭줍기'

자본주의와 노동권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의 생활이 크게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는 장인의 시대였다. 생산은 가내 수공업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일할 것인지는 장인이 스스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장이 들어서면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일하게 되었다. 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 복종해야만 했고, 자신의 노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던 권리를 빼앗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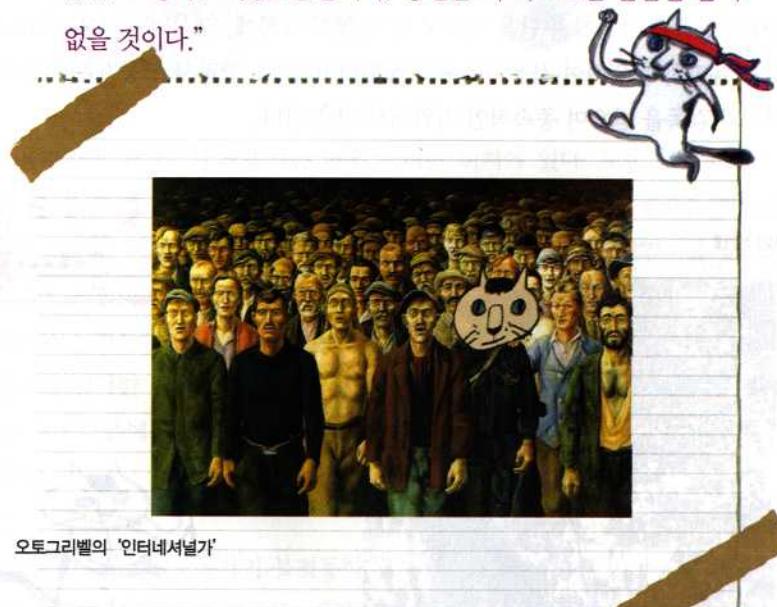
더불어 노동 조건이 열악해졌다. 임금은 싸고, 노동 시간은 길었으며, 공장의 환경은 비위생적이고,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도시의 빈민窟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고용되었고 착취가 심해졌다. 반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용자의 지위는 크게 강화되어 노사간의 불평등이 계급적 차이로 심화되어갔다.



케테콜비츠의 '독일 어린이들이 굶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연대 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여 노동운동이 거세졌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각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가 일제히 일어났다. 시위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시위 주동자 8명이 체포되어 4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파업지도자 스파이즈는 최후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고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은 이 타오르는 들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오토그리벨의 '인터네셔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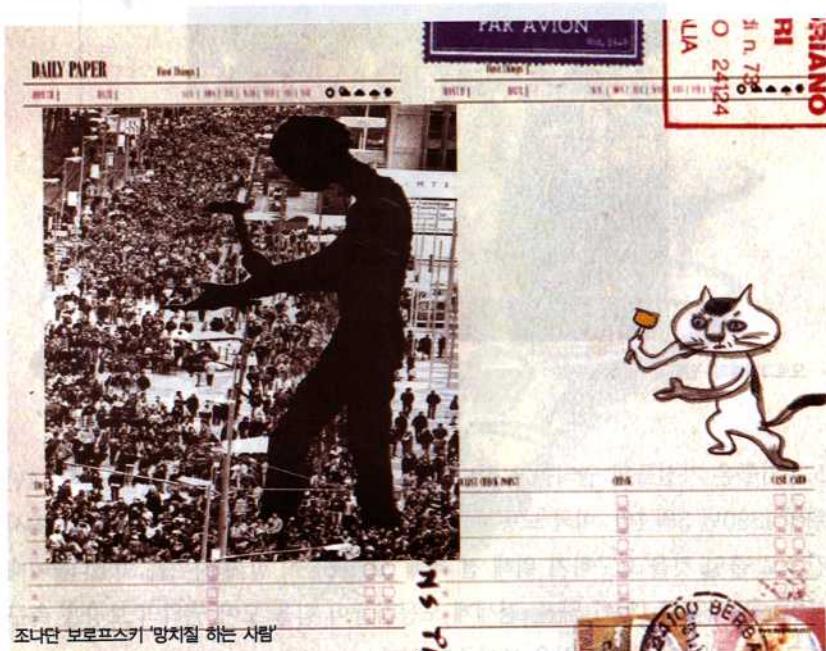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들불이 되어 일어났던 것이다. 4년 뒤인 1890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고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시위를 벌였다. 이때부터 해마다 5월 1일이 되면, 전세계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권리의 보장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일을 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 토지나 건물, 기계 등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사용자'라고 부른다. 사용자는 사장, 사업주, 고용주 혹은 자본가라고 불린다. 사용자는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지시받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한다.

노동자는 상품을 생산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지위에서 일을 한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말이다. 사용자는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비용을 줄이려고 애를 쓴다. 인건비를 낮추고 꽤 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에는 소극적으로 투자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또 사용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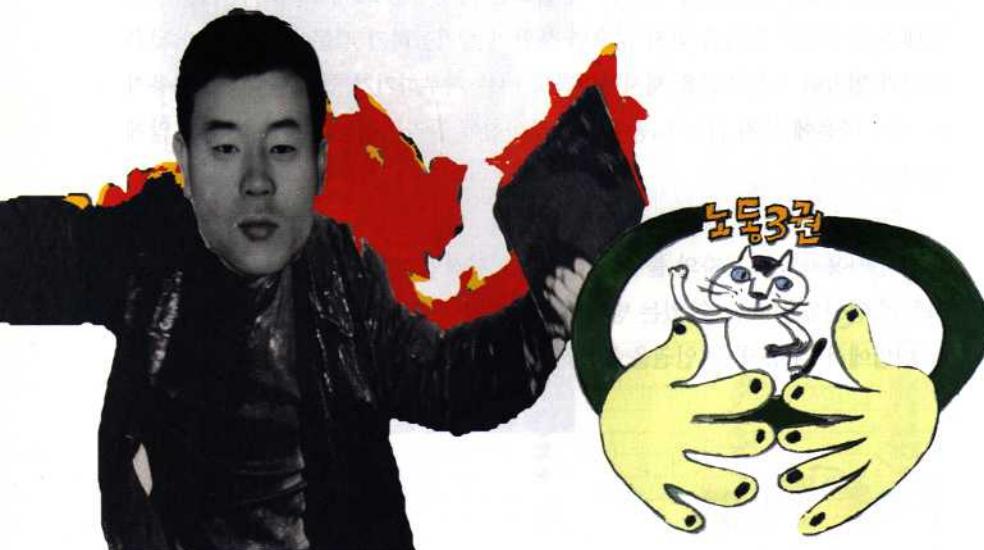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사적인 계약에 맡겨놓지 않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권이란

노동권은 인간답게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가장 먼저, 노동권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권의 보장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된다. 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일 8시간의 노동 시간과 1시간의 휴식, 연차·월차·생리휴가·산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물론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노동3권이란 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 등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로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대화로는 노동자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위, 태업, 파업 등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노동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 이는 단지 노동조합원이나 개별 사업장의 개선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소득의 공정한 배분 및 사회 복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에 기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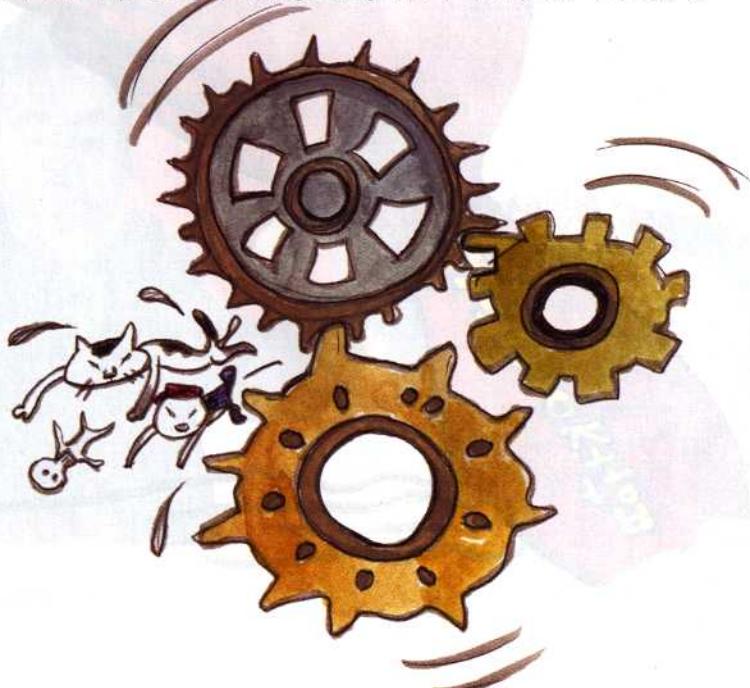


기계와 노동

자본주의 발달 속에 사용자는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사람에 의한 노동보다 기계에 의한 노동이 더 많은 상품을 더 짧은 시간에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에 살아있는 사람 대신 차가운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기계가 들어오기 전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에게 이는 실업을 의미한다.

기계를 조작하는 데에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 없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언제든지 손쉽게 다른 노동자로 교체할 수 있다. 고용에 대한 위협은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수준으로 낮추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노동자의 저항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맑스는 “자본가의 노동자 지배는 사물의 인간에 대한 지배이고, 죽은 노동의 산 노동에 대한 지배이며, 생산물의 생산자에 대한 지배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노동자들은 기계의 도입에 거세게 저항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기계파괴자들, 즉 러다이트 운동이 등장하였다. 1811년부터 1817년까지 영국 직물 공업지대에서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직조기계를 파괴하였다.



포드주의와 노동

생산기술은 계속 발전하였고, 20세기 들어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 체제, 즉 포드주의가 등장하였다. 포드주의는 1910년대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데서 유래하였다. 또한 포드주의는 노동자의 작업을 단순화하고 세밀하게 관리하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즉 테일러주의와 결합하였다.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는 노동자를 철저히 탈숙련화하였다. 노동자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기계의 완벽한 부속기관이 되어 단순반복적인 노동을 해야 할 뿐이었다. 생각은 오로지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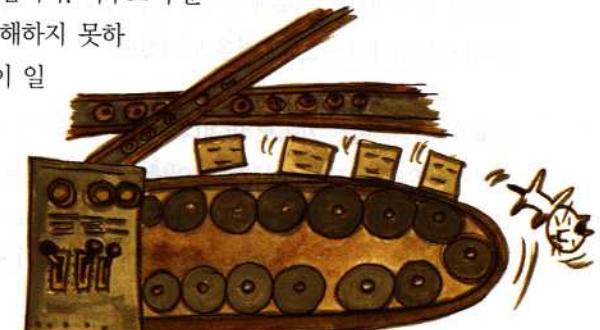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계의 도입으로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이다. 기술은 이런 사회적 권력 관계 속에서 개발되고, 도입되고, 사용되고 있다.

“반복적인 노동, 즉 한 가지 일을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노동은 어떤 이들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반복작업이 별로 두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생각이 필요 없는 직업을 선호한다.”

— 헨리 포드

“무쇠를 다루는 일에 적합한 사람의 일차적 요건은 의식구조가 소에 가까울 정도로 우둔하고 명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도 우둔해서 ‘퍼센트’라는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 일을 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한다.”

— 프레데릭 테일러



해리 브레이버맨은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는 관리자의 손으로 조정되며 기계장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포드는 작업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노동자를 통제하려 하였다. 포드의 공장에는 ‘사용자의 첨자가 포드자동차 만큼이나 많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감시가 심했다. 심지어 폭력배들로 조직된 구사대를 두어 노동자들의 침묵을 강요했다.



포드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고문, 집단 린치를 자행하는 폭력이 횡행하였다. 1933년 중반부터 1936년 말까지 100명 이상의 파업노동자들이 시위 도중 살해당했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1933년 미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거의 1,700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은 해마다 늘어나 1936년에는 2,200건을 넘어섰다.

노동자들은 물밀듯 거리로 밀려나왔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일방적인 해고를 반대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보장과 의료·교육 서비스의 확충을 요구하였다. 비인간적인 포드주의는 1960년대 이후 위기에 처한다

정보화와 노동

포드주의는 노동자의 저항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대량생산을 주로 하는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은 시장수요나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재고는 항상 쌓여있었다. 또 석유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모한 결과, 자원의 고갈과 대량의 산업폐기물을 가져와 생태 환경의 위기를 불러 왔다. 생산에 따른 이윤이 줄어들자 자본은 저임금과 시장을 찾아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정보화에 박차가 가해졌다. 생산 시설에 도입된 정보화는 기계의 기계, 즉 컴퓨터의 등장을 통해 노동자 없는 공장을 꿈꾼다.

지난 25년 동안 자본주의는 수치제어 기계, 로봇, 자동출하 장치, 적시재고관리 체계, 전사적 자원관리체계(ERP) 같은 컴퓨터화된 생산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정보화'의 노동대체 능력은 실로 놀라웠다. 컴퓨터로自動화된 공장에서는 수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투쟁의지를 억눌러야 했고, 노동조합들도 단체교섭이나 협상에서 마지못해 양보했다.

물론 컴퓨터를 다루면서 고임금을 받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프로그래머와 같은 전문적 노동자가 등장했지만, 이는 전체 노동자 중 일부분일 뿐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정보 산업으로 유명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내는 고임금 지식 노동자는 대부분 백인 남성이자 고학력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는 관리자, 정원사, 카페테리아 점원, 마이크로칩 조립공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주로 여성이나 이민자, 소수 인종이고,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으며, 건강보험·출산수당이나 성희롱에 맞설 방법도 없이 낮은 임금만 받으며 일한다.

이런 양극화와 노동권의 후퇴는 정보화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자 감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 또한 확산되고 있다. 사실 노동자 감시는 자본주의 등장 이후 계속되어 왔다.

한정된 시간 안에 잠재적인 노동력에서 최대한의 생산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자는 작업장을 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 정보화 기술을 이용해 직장에서 노동자 개인을 감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작업에 대해 전자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심해졌다.

CCTV, 휴대폰이나 GPS 위치추적, 스마트카드 출입관리, 지문·홍채를 이용한 생체인식 뿐 아니라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와 인터넷 메일·메신저에 대한 무단 열람과 도청이 늘고 있다.



사용자는 보안, 도난방지, 안전사고 예방, 정보유출 차단 등을 명목으로 감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부당하게 노동통제를 하는 데 악용되는 일이 많다.

작업장에 설치된 감시 장비는 노동조합 활동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이후 노동자들끼리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노동조합 간부를 피하게 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도 드나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조합원들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노조 활동도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자 감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감시에 대한 대응

-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사용자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그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된다.
- 사용자는 노동자의 성생활, 사상, 종교, 전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과정,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는 금지된다.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작동되고 있는 감시장비는 모두 몰래 감시이다. 노동자 몰래 수집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화장실·탈의실·휴게실 등 사적인 공간과 노동자의 사교,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정보화로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보화로 인해 노동권이 위축되고 노동자 감시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거나 살아갈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정보고속도로에 희생되는 '로드 퀄' *이라고 부르며 저항하고 있다.

정보화는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의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인터넷 메일과 카페를 이용해 소통한다. 이 사실은 기술이 중립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며 기술을 구성한다는 말이다. 기술은 우리에 맞서서 사용되든지, 우리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다.

노동자가 정보화 시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으려면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치적 자유와 같은 여타의 정보 인권이 노동권과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 로드킬 : 고속도로에 의해 희생되는 야생동물들

③ ③ ③ 저작권

140 세계인권선언 제27조

141 어떤 재판

149 저작권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떤 재판

